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6. 12 (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7. 6. 20(수)

다. 상정일자 : 2007. 6. 21(목) 제13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 6. 21)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김장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금고지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 금고의 해지(안 제10조)
- 금고운영에 관하여 보고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활동에 대하여 수당지급(안 제1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금고지정 방법을
- 안 제3조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금고의 해지를 안 제11조에서는 금고운영에 관하여 보고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활동에 대하여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작성하였으나,
-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충족하는 금고지정대상 금융기관은 농협 협동조합 평창군지부만 해당되어 경쟁 지정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해
 -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군 금고내 정기에금 예치금리, 자치단체 대출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등이 경쟁을 통해 지정하는 타 시·군보다 수혜가 적을 것이라 사료됨
- 기타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금고는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금고는 회계구분없이 한개의 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
-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규정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제7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7인이상 9인 이하로 군수가 임명
 - 자격 :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관련분야 전문가, 군소속 공무원
 - 기능 : 금고 지정방식, 선정자료 등 심사

라. 금고지정 및 약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금고 공모후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 약정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30일전까지 금고 지정
-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마. 금고의 해지 (안 제10조)

-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바. 금고운영에 관하여 보고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

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활동에 대하여 수당지급(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실시(2007. 3. 22 ~ 4. 10) 결과, 의견제출 없음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①군수는 군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평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 지정기준) ①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1인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금고의 지정절차) ①군수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 약정) ①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군의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8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 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소 계	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5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안정성, 2점)	(17)	
	소 계	18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5)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5)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소 계	20	
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6)	
	소 계	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역운영계획	(5)	
	소 계	10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군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5)	
	나. 군과 협력사업 추진계획	(5)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